

학교법인 레마학원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7인	재직이사	6인
감사정수	2인	재직감사	2인

1. 개최 일시 : 2020.05.14.(목) 17:00~18:30 (회의소집 통보일 : 2020.05.04.)

2. 개최 장소 : 화상회의(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비대면 회의 : 증빙자료 별첨)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 이사(5인) : 윤원영(이사장), 이명범, 노만균, 송민, 이미순
- 감사(2인) : 권성연, 조영임

○ 불참 임원

- 이사(1인) : 박종환

4.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 (1) 제1호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 (2) 제2호 : 임원(이사) 선임(안) 심의.
- (3) 제3호 :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심의

[예명대학원대학교]

- (4) 제4호 : 2019회계연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 (5) 제5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 심의
- (6) 제6호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 (7) 제7호 : 직제규정 개정(안) 심의
- (8) 제8호 : 제 규정 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기타 안건]

- (9) 제9호 :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간(間)서명 건

간서명	노만균	송민	이미순
-----	-----	----	-----

5. 회의 내용

□ 개회 선언, 기도 및 전차 회의록 접수

- 이사장(의장) : 이사정수 7인 중 5인 참석으로 성원이 되어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기도를 한 후, 2019학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접수하다. 안건 심의는 제1호 안건부터 제9호 안건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겠다고 알리다.

□ 안건 심의

(제1호 안건)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 이사장(의장)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정영준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정영준 사무국장 :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1) 변경 사유

- 법인 사무소의 주소를 현 대학원대학교 소재지로 변경하고, 법인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7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등을 정관 관련 규정에 반영하거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 변경 내용

- 법인 사무소 주소를 경기도 화성시에서 분사무소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로 변경함(제4조)
- 예산 편성과 집행 절차를 명확히 명시함(제9조)
- 법인 임원 중 이사의 정수를 현행 7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중임 가능함을 명확히 함(제18조, 제19조)
- 정관에 누락되어 있는 교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 사립학교법 관련 조항을 신설함(제37조의2, 제54조의2, 제61조의2)
- 교원의 휴직 사유, 직위해제 및 해임,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징계의결, 징계사유의 시효 등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내용을 반영함(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54조, 제61조, 제63조)
- 도서관이 대학원대학교의 부속기관임을 명시하고 하부조직은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제75조)
- 부설연구기관을 추가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75조의2)
- 이사정수 증원(제18조)의 시행일을 부칙에 명기함(부칙 시행일)

(3)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자료)

~ 등의 법인 정관 변경안을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간서명	노만균	노만균	송민	송민	이미순	이미순
-----	-----	-----	----	----	-----	-----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질의와 논의 후)
- 송 민 이사 : 원만한 이사회 운영을 위해 이사정수도 늘릴 필요가 있고, 변경안이 주로 사립학교법 상 조문이 누락되거나 개정된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법인 정관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노만균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 노만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변경(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2호 안건) 임원(이사) 선임(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임원(이사) 선임(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임원(이사) 선임(안)에 대하여,
 - (1) 선임 이유
 - 현재 학교법인 정관에 이사정수가 7인이나 재적이사는 6인이고, 1인은 임기 만료 후 결원 상태이며, 이번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으로 이사정수가 7인에서 8인으로 증원됨에 따라 신임이사 1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총 2인을 이사로 새로이 선임하는 것임
 - (2) 이사 선임 후보자(안)
 - 현 이사정수에 따른 결원 보충(1인) : 임성빈(비상임/교육/신임)
 - 숭실대학교 IT대학 전자정보공학부 교수(공학박사, 1964년생)
 - 이사정수 증원에 따른 추가 선임(1인) : 조장환(상임/중임)
 - 전, 학교법인 상임이사
 - 이사 임기
 - 관할청(교육부)의 임월 취임승인일로부터 3년간
 - ~ 등의 임원(이사) 선임안을 회의 자료로 설명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이 논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논의 후)
- 노만균 이사 : 장기간의 교육경력과 다양한 분야의 산업체 경력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임성빈 숭실대 교수를 신임 이사로 추천하고, 학교법인의 운영과 대학 경영에 해박한 조장환 전임 상임이사를 다시 상임이사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다.
- 이미순 이사 : 노만균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송 민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간서명	노만균		송 민		이미순	
-----	-----	--	-----	--	-----	--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이사 선임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므로, 임성빈 승실대 교수를 비상임이사(교육이사)로, 조장환 전 상임이사를 상임이사로 관할청인 교육부의 임원 취임승인일로부터 3년간 임기로 선임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음을 선언하다.

(제3호 안건)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안) 심의

(제4호 안건) 2019회계연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 이사장(의장) :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결산(안)” 심의의 안건을 동시에 상정하며, 각 회계별 결산(안)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를 법인 감사인 권성연 감사에게 요청하다.
- 권성연 감사 : 학교법인 레마학원 권성연 감사와 조영임 감사는 사립학교법 제19조 제4항 및 회계감사 기준 및 회계감사 준칙에 의하여 2019회계연도 학교법인 레마학원 결산서 및 재무재표와 예명대학원대학교 교비회계의 결산서를 감사한 결과 적정하게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각 회계별 결산(안)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법인 일반회계]

자금계산서 결산(안)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내 용
예 산 액	377,319,126원	1,171,174,000원	2018 결산 대비 810,680천원 감소 2019회계연도 예산 대비 95,587천원 증가
결 산 액	472,906,532원	1,283,586,089원	
차기이월자금	75,850,223원	87,119,126원	

대차대조표 결산(안)

구 分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전기말)	비고
자 산	15,170,482,125원	15,181,952,628원	-11,470,503원	
부 채	404,228,182원	471,577,625원	-67,349,443원	
기본금	16,823,655,756원	16,823,655,756원	0원	
운영차액	-2,057,401,813원	-2,113,280,753원	55,878,940원	

간서명	노만균	송민	이미순
-----	-----	----	-----

□ 운영계산서 결산(안)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차액(당기-전기)	비고
운영 수익	386,323,705원	872,733,481원	-486,409,776원	
운영 비용	330,444,765원	596,291,088원	-265,846,323원	
당기운영차액	55,878,940원	276,442,393원	-220,563,453원	

[법인 수익사업회계]

□ 자금계산서 결산(안)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내 용
예 산 액	563,631,908원	1,120,973,000원	
결 산 액	696,885,360원	1,105,943,399원	
차기이월자금	79,197,501원	35,631,908원	2018 결산 대비 409,058천원 감소 2019회계연도 예산 대비 133,253천원 증가

□ 대차대조표 결산(안)

구 分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전기말)	비고
자 산	7,637,384,062원	7,632,092,371원	5,291,691원	
부 채	2,218,677,226원	2,213,385,575원	5,291,691원	
자본금	3,940,077,197원	3,940,077,197원	0원	
이익잉여금	1,478,629,599원	1,478,629,599원	0원	

□ 운영계산서 결산(안)

구 分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차액(당기-전기)	비고
운영 수익	878,253,452원	1,222,697,749원	-344,444,297원	
운영 비용	878,253,452원	1,222,697,749원	-344,444,297원	
당기순이익	0원	0원	0원	

[학교(교비)회계]

□ 자금계산서 결산(안)

구 分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내 용
예 산 액	2,323,907,087원	2,686,084,041원	
결 산 액	2,421,419,851원	2,488,904,452원	2018회계연도 결산 대비 67,485천원 감소 2019회계연도 예산 대비 97,513천원 증가
차기이월자금	385,013,309원	138,864,087원	

간서명	노만균	송 민	이미순
-----	-----	-----	-----

□ 대차대조표 결산(안)

구 분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전기말)	비고
자 산	7,213,926,665원	7,089,241,001원	124,685,664원	
부 채	326,001,983원	366,748,595원	-40,746,612원	
기본금	6,900,000,000원	6,900,000,000원	0원	
운영차액	-12,075,318원	-177,507,594원	165,432,276원	

□ 운영계산서 결산(안)

구 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차액(당기-전기)	비고
운영 수익	2,283,032,326원	2,507,360,925원	-224,328,599원	
운영 비용	2,117,600,050원	2,436,852,290원	-319,252,240원	
당기운영차액	165,432,276원	70,508,635원	94,926,641원	

~ 등의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로 계정과목별 내용을 설명한 후, 외부회계법인인 한길회계법인의 결산 감사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확인 의견의 감사보고서를 받았고, 학교(교비)회계에 대해서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질의와 논의 후)
- 이미순 이사 :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와 학교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권성연 감사와 조영임 감사 두 사람의 학교법인 감사의 내부감사와 한길회계법인의 외부 회계 감사를 이미 받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았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명범 이사 : 이미순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송 민 이사 : 이명범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결산안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2019회계연도 법인회계(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결산(안)”과 “2019회계연도 학교회계(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5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 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간서명	노만균		송 민		이미순	
-----	-----	--	-----	--	-----	--

(1) 검토 배경

- 현재 학생 입학정원에 대하여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에 서로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음
 - 학칙 : 석사과정 75명, 박사과정 15명 (계 90명)
 - 학칙 시행세칙 : 석사과정 37명, 박사과정 5명 (계 42명)
- 그동안 학생정원을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운영해 왔으나, 「2019년 제1차 대학정보공시 현장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2019.6.13. 교육부)에 따르면 오입력 사항을 시정하여 학칙 기준대로 운영토록 함
 - 시정내용 : 석사과정 75명(2년제 63명, 3년제 12명), 박사과정 15명
- 이에 적절한 규모의 학생정원을 책정하여 학칙에 반영함으로써 학생정원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

- 정부의 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기준, 학교 재정 형편 및 학생 충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조정함
 - 정부의 정원 조정 기준 : 입학정원 순증 불가*, 4대 교육여건** 기준 충족
* 2020학년도 대학원 정원조정 및 설치 세부기준(교육부, 2019. 4.)
** 4대 교육여건 :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 입학정원 조정(안) : 석사과정 73명, 박사과정 15명 (합계 88명)
 - 적용 시기 : 이사회 심의·의결 후 2020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적용·시행
~ 등의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로 설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질의와 논의 후)
- 이명범 이사 :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에 대하여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여건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 교육여건이 충족되는 범위 내에서 반영하였고,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도 이미 받았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미순 이사 : 이명범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생 입학정원 조정(안)” 심의 건은 석사과정 73명, 박사과정 15명으로 조정하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6호 안건)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간서명	노만균	송민	이미순
-----	-----	----	-----

○ 사무국장 :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1) 개정 이유

- 학생정원의 의미와 인원수를 명확히 하고, 학칙 개정 시 법령사항인 사전공고 절차를 반영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은 제외하며, 학칙 시행세칙의 제정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임을 명확히 하고 입학정원도 조정된 정원으로 학칙과 학칙시행세칙 규정을 일치시킴(학칙 제5조, 학칙 시행세칙 제1조의2)
- 학교 휴업일의 용어를 명확히 함(학칙 제10조)
- 편입학과 관련하여 정원의 의미를 명확히 함(학칙 제15조)
- 학칙 개정 절차에 사전공고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은 제외함 (학칙 제41조)
- 부설연구기관에 예명상담센터를 추가(신설)하고, 부설연구기관명을 명확하게 함(제49조)
- 학칙에 누락된 학칙 시행세칙 제정 근거 조항을 신설함(학칙 제51조)
- 용어를 정관 규정과 일치되게 하고 기타 현실에 맞게 자구 수정함 (학칙 제1장, 제13장, 제16장, 제17장, 제43조 등)
~ 등의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에 따라 신구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에 대해 대학원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질의와 논의 후)

○ 송 민 이사 : 주요 내용이 조정된 학생 입학정원을 학칙과 시행세칙에 반영하고 상담센터를 부설연구기관으로 신설하는 것 등이고, 이미 대학 내의 여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이미순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이미순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예명대학원대학교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7호 안건)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간서명	노만균	송민	이미순

(1) 개정 이유

- 부설연구기관을 추가하고 부속기관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교원의 구분을 법령(고등교육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함
아울러, 용어를 법령, 정관 또는 학칙과 일치되게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부설연구기관에 예명상담센터를 추가(신설)하고, 부설연구기관명을 명확하게 함(제5조)
- 부속기관에서 교목실, 생활관을 삭제(폐지)함(제6조)
- 교원의 구분에 총장, 강사를 추가하고 조교를 삭제함(제12조)
- 용어를 고등교육법, 정관 또는 학칙과 일치되게 수정함(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 등의 직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에 따라 신구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와 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질의와 논의 후)
- 이미순 이사 : 학칙과 같이 상담센터를 신설하고, 현재 운영하지 않는 교목실과 생활관을 폐지하는 것이 주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송 민 이사 : 이미순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노만균 이사 : 송 민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직제 규정 개정(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8호 안건) 제 규정 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 이사장(의장) : “제 규정 관리규정 개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며, 본 안건에 대해 사무국장에게 설명을 지시하다.
- 사무국장 : 제 규정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1) 개정 이유

- 학칙(학칙 시행세칙 포함)은 제 규정과 구분되는 상위임을 명시하고, 학칙 개정절차를 학칙 조항과 맞게 하며, 규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총장을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학칙은 제 규정보다 상위임을 명시함(제2조, 제12조)
-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을 제 규정의 종류에서 제외함(제5조, 제9조)

간서명	노만균	송 민	이미순	박
-----	-----	-----	-----	---

- 학칙은 학칙 상 개정절차에 맞게 개정 시 이사회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함(제9조)
 - 규정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서 총장을 제외하고, 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학칙은 제외함(제11조)
 - 기타 다른 조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의 항목 구분에 목을 표시함(제7조, 제15조)
- ~ 등의 제 규정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회의 자료에 따라 신구 조문 대비표 내용으로 자세히 설명하며, 이에 대해서는 대학원위원회와 규정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하다.
- 이사장(의장)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사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하다.
(질의와 논의 후)
 - 송 민 이사 : 학칙이 다른 규정보다 상위라는 것을 명시하고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기관장인 총장을 제외하는 내용 등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를 제안하다.
 - 노만균 이사 : 송 민 이사의 제안에 동의하다.
 - 이미순 이사 : 노만균 이사의 동의에 재청하다.
 - 이사장(의장) : 이사들의 동의와 재청에 따라 승인에 대한 찬성 여부를 묻고 참석이사 전원이 찬성하여, “제 규정 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제9호 안건)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건

- 이사장(의장) :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건을 상정하며, 오늘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은 노만균 이사, 송 민 이사와 이미순 이사를 지정하고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다.
- 노만균 이사, 송 민 이사, 이미순 이사 : 간서명에 동의하다.
- 이사장(의장) : 간서명할 이사 3인과 다른 참석이사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노만균 이사, 송 민 이사, 이미순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간서명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다.

6. 폐회 선언

- 이사장(의장) : 더 이상 다른 안건이 없음을 확인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한 후 2020학년도 제1차 이사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붙임 : 정관 변경 내용(신구 조문 대비표) 1부

간서명	노만균	송 민 송민	이미순 이미순
-----	-----	--------	---------

2020. 5. 14.

학교법인 레마학원 이사장 윤원영 윤원영

이사이명범 이명범

이사노만균 노만균

이사송민 송민

이사이미순 이미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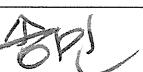
감사권성연 권성연

감사조영임 조영임

[복 임]

□ 학교법인 레마학원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4조(주소)</p> <p>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삼성1로1길 20(석우동)에 둔다. <개정 2008.7.29., 2014.10.18.></p> <p>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둔다.</p> <p>1. 서울 분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49(서초동)<개정 2012.7.29., 2014.10.18.></p>	<p>제4조(주소)</p> <p>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49(서초동)에 둔다.</p> <p>② <삭 제></p>	법인 주소 지변경사항 반영하고 분사무소를 폐지(삭제)
<p>제9조(회계의 구분)</p> <p>① · ② (생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p> <p>④ (생략)</p> <p>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 학교의장으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신설 2015.6.1.></p> <p>⑥ (생략)</p>	<p>제9조(회계의 구분)</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대학평의원회의 자문과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 · 의결을 거친 후 학교 법인 이사회가 심사 · 의결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며,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심사 · 의결하고 이사장이 집행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삭 제></p> <p>⑥ (현행과 같음)</p>	예산 편성 절차를 반영하고 제5항을 제3항에 통합하고 제5항을 삭제

간서명	노만균		송 민		이미순	이미순
-----	-----	---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p> <p>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7인(이사장 1인 포함) <개정 2005.08.22., 2017.07.04.></p> <p>2. 감사 2인</p> <p>②(생략)</p>	<p>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p> <p>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1. 이사 8인(이사장 1인 포함)</p> <p>2. 감사 2인</p> <p>②(현행과 같음)</p>	이사 정수 증원 (7인 → 8인)
<p>제19조(임원의 임기)</p> <p>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개정 2008.9.8., 2014.11.23.></p> <p>1. 이사 3년</p> <p>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u>중임 가능</u></p> <p>②(생략)</p>	<p>제19조(임원의 임기)</p> <p>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p> <p>1. 이사 3년(중임 가능)</p> <p>2. 감사 2년(1회에 한하여 중임 가능)</p> <p>②(현행과 같음)</p>	이사 중임 가능 명시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u>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u>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u>설치·경영하는</u>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자구 수정
<신설>	<p>제37조의2(교원의 정년 및 명예퇴직)</p> <p>①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학의 장 및 비전임교원은 예외로 한다.</p> <p>②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의 명예퇴직은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사립학교법 관련 조항 반영 신설 (법 제53조 의2, 제60 조의3) * 정년의 경우 교육 공무원법 제 47 조 준용</p>

간서명	노만균	노만균	송민	송민	이미순	이미순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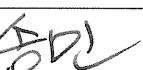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38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u>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개정 2008.9.8.></p> <p>1. ~ 6. (생 략) 7. <u>자녀(휴직신청 당시 만 6세 초등학교 취학 전인 자녀)</u>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9.8.> <추 가></p> <p>8. ~ 11. (생 략) <추 가></p>	<p>제38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u>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p> <p>1. ~ 6. (현행과 같음) 7. <u>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u>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p> <p><u>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입양하는 경우</u> 8. ~ 11. (현행과 같음) 12. <u>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u></p>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반영 (법 제59조)
<p>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u>다음과 같다.</u></p> <p>1. ~ 2. (생 략) 3. 제38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u>3개월</u> 이내로 한다. 4. ~ 5. (생 략) 6. 제38조 <u>제7호의</u>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7. ~ 10. (생 략) <추 가></p>	<p>제39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u>다음 각 호의 1과 같다.</u></p> <p>1. ~ 2. (현행과 같음) 3. 제38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u>3월</u> 이내로 한다. 4. ~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 <u>제7호 및 제7호의2의</u>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7. ~ 10. (현행과 같음) 11. <u>제38조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u></p>	제38조 휴직 사유에 따른 휴직 기간 명시

간서명	노만균	노만균	송민	송민	이미준	이미준
-----	-----	-----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p> <p>① (생략)</p> <p>②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u>제11호</u>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08.9.8.></p>	<p>제41조(휴직교원의 처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38조 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u>제12호</u>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다.</p>	<p>제38조 제12호 추가에 따른 반영</p>
<p>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p> <p>① <u>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u><본항 신설 2008.9.8.></p> <p>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u><삭제 2008.9.8.></u> <p><u><추 가></u></p> <p>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9.8.></p>	<p>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p> <p>① <삭제></p> <p>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3. <u>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u>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5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p>③ <u>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u></p>	<p>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반영 (법 제38조의2)</p> <p>* 제1항을 제2항으로 이동</p>

간서명	노만균	노만균	송민	송민	이미순	이미순
-----	-----	-----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개정 2008.9.8.></p> <p>⑤·⑥(생략)</p> <p>⑦제2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9.8.></p> <p>⑧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개정 2008.9.8.></p>	<p>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p> <p>⑤·⑥(현행과 같음)</p> <p>⑦제2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면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p>	
<p>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p> <p>①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의 위원으로 조직한다.</p> <p>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5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p> <p>①교원의 징계사건을 삼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며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외부위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반영 (법 제62조) - 외부위원 최소 1명 이상 포함</p>

간서명	노만균		송민		이미순	
-----	-----	---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신 설>	<p><u>제54조의2(징계의 사유 및 종류)</u></p> <p><u>①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u></p> <p><u>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u></p> <p><u>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u></p> <p><u>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u></p> <p><u>②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u></p> <p><u>③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u></p> <p><u>④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u></p> <p><u>⑤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u></p>	사립학교법 조항 반영 신설 (법 제61조)
제61조(징계의결)	<p><u>제61조(징계의결)</u></p> <p><u>① (생략)</u></p> <p><u>②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u></p>	<p>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반영 (법 제66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처분 기한 (7일→15일) - 자구 수정

간서명	노만균	노만균	송민	송민	이미순	이미순
-----	-----	-----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 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p> <p>④징계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⑤(생략)</p>	<p>③임면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1조의2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p> <p>④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p> <p>⑤(현행과 같음)</p>	
〈신설〉	<p>제61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p> <p>①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 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1조 제2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p>②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자체 없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p>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반영 신설 (법 제66조의2)
제63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	제63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사항 반영 (법 제66조의4)

간서명	노만균	송민	송민	이미순
-----	-----	----	----	-----

현 행	변 경 안	비 고
<p>제73조(총장 등)</p> <p>① (생략)</p> <p>② 총장은 교무를 <u>통할하고</u> 소속 교직원을 <u>지휘·감독하여</u> 학생을 <u>지도하고</u> 대학원대학교를 대표한다.</p> <p>③ 대학원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를 겸보한다.</p> <p>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여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p>제73조(총장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총장은 교무를 <u>총괄하고</u> 소속 교직원을 <u>지휘·감독하고</u> 학생을 <u>지도하며</u> 대학원대학교를 대표한다.</p> <p>③ 대학원대학교에 부총장 1인을 둘 수 있으며,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p> <p>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p>	용어를 고등 교육법 관련조항과 일치되게 수정 및 자구 수정
<p>제75조(도서관)</p> <p>① 도서관에 도서관장을 두되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p> <p>② 도서관에 관리과를 두되, 도서관의 모든 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관리원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보한다.</p>	<p>제75조(부속기관)</p> <p>① 대학원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도서관을 두며, 도서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p> <p>② <삭 제></p>	부속기관으로 도서관을 두며 하부조직은 학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직제 또는 도서관운영규정)
<p>제75조의2(연구기관 등)</p> <p>대학원대학교 또는 법인에 평생교육원, 성서연구원, 어학교육원을 둘 수 있다.</p> <p><신설 2014.10.18., 개정 2015.9.30.></p>	<p>제75조의2(부설연구기관 등)</p> <p>법인 또는 대학원대학교에 부설 연구기관으로 평생교육원, 성서 연구원, 어학교육원 및 기타 기관을 둘 수 있다.</p>	부설연구기관을 추가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p>제76조(정원)</p> <p>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 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개정 2014.10.18.></p>	<p>제76조(정원)</p> <p>법인 및 대학원대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p>	용어의 일관성 유지
	<p>부 칙</p> <p>(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동 규정에 따라 선임된 이사에 대한 관할청의 취임승인일부터 적용한다.</p>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명확하게 함

간서명	노만균	송민	이미순
-----	-----	----	-----

